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29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윤건영 · 양부남 · 신정훈  
윤준병 · 한준호 · 차지호  
이광희 · 김문수 · 정태호  
김성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등).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광역시”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